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4. 4.
운영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발의일자 : 2008년 3월 25일
- 나. 발 의 자 : 고기판 의원 외 9인
- 다. 회부일자 : 2008년 3월 28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3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4월 2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고 기 판 의원)

가. 개정이유

- 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고 또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2개 조문에 내용을 모두 함축하여 내용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세분화하여 조문화함으로써 쉽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전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안 제2조)
- 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며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청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포함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13조)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김 병 욱)

- 본 조례안은 제2조 윤리강령 및 제3조 윤리실천규범을 세분화하여 조문화함으로써 쉽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007.5.11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 査 結 課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	-----

발의년월일 : 2008년 3월 25일
발 의 자 : 고기판 의원 외 9인

1. 개정이유

- 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고 또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가 2개 조문에 내용을 모두 함축하여 내용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세분화하여 조문화함으로써 쉽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전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안 제2조)
- 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며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청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포함한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13조)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생략
-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의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정당활동 및 지역행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